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느2:17, 앱5:26~27)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수신 노회장

참조 사회봉사부장

제목 수해(집중호우) 피해구호를 위한 전국모금 참여 및 수해 피해보고 요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총회는 제104-12차 총회 임원회를 통해 수해(집중호우)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전국모금을 결의하였습니다. 수해로 인해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교회들과 이웃들에게 전국교회가 사랑과 연대의 손길을 펼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8.12. 06:00 현재/이하 중대본) 집중폭우로 인해 사망 33명, 실종, 9명, 이재민 7,809명이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7일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으며 중대본은 풍수 재해 위기경보단계 ‘심각’지역을 16개 시·도로 확대하였습니다.

8.12.현재, 총회 산하 17개 노회 63개 교회가 피해보고를 하였으며 계속적인 추가 보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형제된 교회의 아픔과 이웃의 절망에 위로와 사랑을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해구호 모금계좌 : 신한은행 140-005-699499(총회재해구호)

* 입금 확인을 위해서 현금을 입금하신 후 총회 사회봉사부(02-741-4358)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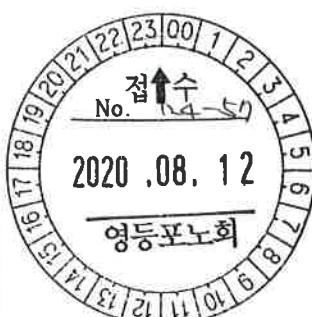
* 협조사항 :

1. 귀 노회의 소속 교회가 모금에 참여하도록 지교회로 공문을 발송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붙임1 : ‘재해 피해보고서 양식’과 ‘재해 피해보고 양식 작성지침’에 따라 지노회 소속 교회들의 피해상황을 파악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붙임2 : ‘재해 피해보고 작성지침’. 끝

총회장 김태
사회봉사부장 홍성



실장 이명숙 총무 오상열 사무총장 변창배

시행 사회봉사부-837 (2020.8.12.)

우 03128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3길 29, 6층 (연자동, 총회창립100주년기념관)
전화 02-741-4358 전송 02-747-0043 / plain21@pcknet.org

/www.pck.or.kr
/공개

붙임1:

재해 피해보고서 양식

보고일 : 20 년 월 일

교 회	담임목회자	전화번호(핸드폰)	주소
세례교인수	교회 연 예산(*필수기재)	추정피해액 보고	노회 산정 피해액

피해 개요 (해당되는 항목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당 전파() 반파() 침수() 기타(예: 교회종탑파손, 축대파손)
교육관 전파() 반파() 침수()
사 택 전파() 반파() 침수()

상세 피해 내용 (피해 내용을 자세하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사진 등)를 필히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복구 계획 (복구 기간, 재정 충당 등을 명시하여 자세하게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회 사회봉사부 실사 보고	
----------------------	--

총회 사회봉사부 양식

붙임2: 재해 피해보고 작성지침¹⁾

1. 재해구호 지원 신청 기준

- 1) 수해(집중호우)와 직접 관련된 피해이여야 한다.
- 2) 수해(집중호우)피해 보고는 30일 이내에 총회에 접수해야 한다.
- 3) 피해보고서는 총회 사회봉사부 소정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교회, 담임목사, 전화번호, 주소, 세례교인수, 교회연예산, 추정피해액, 피해개요, 상세피해내용, 증빙자료(사진포함), 복구계획을 기입하여야 하며, 추정 피해액은 견적서를 첨부, 상세하게 보고하되 원상복구 차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4) 피해보고서에 대해서는 노회 사회봉사부 임원과 노회장의 재가를 받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노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 5) 피해 교회는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자구적인 노력을 하며 외부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복구 계획을 수립하되, 교회 자부담과 노회, 타교회, 기타 지원을 명시하여야 한다.
- 6) 피해 교회의 해당노회 사회봉사부는 피해 현장 답사 등을 통해 피해상황을 신속 정확하게 총회 사회봉사부에 보고하며 보고서에 노회 사회봉사부의 보고 평가와 사회봉사부 자체 산정피해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재해구호 지원 심사

- 1) 총회 사회봉사부는 제출된 피해보고서 중 지원요청 서류가 완비된 문건을 접수한다.
- 2) 피해 교회의 해당노회 사회봉사부에서 미리 피해 교회를 실사, 노회 사회봉사부의 실사보고 평가와 사회봉사부 자체 산정 피해액을 명시하지 않은 문건에 대해서는 총회 실사를 시행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
- 3) 총회 사회봉사부는 제출된 피해보고서를 서면 검토 한 후 실사계획을 마련하여 빠른 시간 안에 현장 실사를 한다.
- 4) 현장 실사는 노회 사회봉사부 임원의 인도 하에 해당 지역의 사회봉사부 실행위원회 혹은 임원과 실무 담당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담당자 단독으로 실사할 수도 있다.
- 5) 피해 보고에 대한 지원 심사는 현장 실사의 보고 내용을 토대로 하여 총회 사회봉사부 실행위원회 혹은 실행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임원회에서 결의한다.
- 6) 노회에서 보고된 피해 상황이 과장되었거나 허위로 보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노회에 행정경고, 지원액 삭감, 지원 취소, 기지원된 지원금 환수 등의 결정을 할 수 있다.

3. 재해구호 지원금 배분

- 1) 재해의 간접적인 피해인 건물 등이 넓어서 누수가 되는 경우, 누수로 인한 화재와 차량, 피아노, 컴퓨터 등 동산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재해피해로 전년도에 지원한 교회의 피해는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아니한다.
- 3) 피해 정도에 따른 기준
 - A급 : 교회 완파 및 그 부속 건물과 사택 모두 피해를 입은 경우
 - B급 : 교회가 완파된 경우
 - C급 : 교회 반파 및 사택의 일부가 파손되었거나 크게 침수된 경우
 - D급 : 교회 침수 및 부속 건물 등이 다소 파손된 피해
 - E급 : 교회 침수 및 부속건물, 시설들이 침수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 4) 재해구호 지원은 교회와 지역사회에 한정하되 재해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교인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지원한다.
- 5) 재해구호 지원은 전례와 현행 지침을 기준으로 하되, 재해구호금 모금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국내재해구호지침”에 따른 지침서 작성 안내입니다.

재해 피해보고서 양식

보고일 : 20 년 월 일

교회	담임목회자	전화번호(핸드폰)	주소	
세례교인수		교회 연 예산(*필수기재)	추정피해액 보고	노회 산정 피해액
피해 개요 (해당되는 항목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당 전파() 반파() 침수() 기타(예: 교회종탑파손, 축대파손) 교육관 전파() 반파() 침수() 사택 전파() 반파() 침수()				
상세 피해 내용 (피해 내용을 자세하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사진 등)를 필히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복구 계획 (복구 기간, 재정 충당 등을 명시하여 자세하게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회 사회봉사부 실사 보고				